



협회 일보



제 909호

2026.6.15

업무 효율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 완료

- ◇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업무 서비스 개선
- ◇ 대체기술인력 경력인정 관련 직무범위 정비로 신뢰성 및 전문성 강화

협회는 지난 6월 11일 개최된 제6차 이사회에서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 규정」과 「대체기술인력 경력인정사업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 규정 개정은 그간 정부에서 요구한 업무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반영코자 이뤄졌으며, 이를 위해 업무 수수료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설치·가동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예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 회원사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심사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처리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체기술인력 경력인정사업 업무처리규정」 개정은 기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상 기술인력의 범위에 부합되지 않는 직무인정 분야(행정 분야, 현장관리인, 임원 등)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금번에 정비되는 직무인정 분야의 경우 실제 경력인정 사례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안내>

-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규정」 별표7 설치·가동 확인 수수료 개정
 - 수수료(부가세 별도) : 1,724,127원/건(회원사의 경우 40% 감면 적용)
 - 운영 개선내용
 - 기존 설치가동 확인서 만료일 이전 신청 등에 관한 유선안내 실시
 -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한 현장심사 인력 증대(현행 2개조 → 최대 4개조 확대)
- 「대체기술인력 경력인정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조(업무의 범위 및 절차 등) 개정
 - 허가기준 상 기술능력과 무관한 행정분야, 현장관리인 및 공정감독, 임원 등에 대한 직무분야 삭제